

담당(실명)	책임자	부서장

[상속] 명의변경 신청서

※ 명의 변경

구분	변경전(피상속인)	변경후(대표상속인)	인감 (소액은 서명)
계좌번호	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계좌	계좌번호 변경 사항 없음	
성명	(피상속인) 김키움	(대표상속인) 김다우	
생년월일	(피상속인) 1950.01.01	(대표상속인) 1975.01.01	
주소	(대표상속인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		
연락처	(대표상속인) 010-1234-5678		

※ 확인 사항

- 상속-명의 변경 시에는 아래 약정에 대한 잔액이 없는 약정은 모두 해지됩니다.
- 약정 잔액이 있는 경우, 해당 약정을 해지하지 않고 상속-명의 변경절차를 진행하며, 대표상속인이 키움증권의 동일 약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, 업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기존 대표상속인의 증권계좌 또는 명의변경 대상 증권계좌 중에서 해당 약정을 별도 해지 해야 함)
- 공동상속 또는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, 명의변경된 계좌에 업무처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해당 상속분만 처리됩니다. (단, 100만원 미만 시 단독 상속 가능)

약정 해지 동의 여부	신용거래약정,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, 매입자금대출약정,대여약정, 청약대출약정 등	
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약정해지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약정해지 미동의

※ 현금 - 주식 이체 신청

- 대표상속인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현금 전액 및 주식 전부를 이체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 주식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, 증권계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동상속 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 (다만, 소액 상속인 경우는 작성 가능)

증권계좌 은행계좌	금융기관명	계좌번호
	(대표상속인) 키움증권	(대표상속인) 1234-5678

담당(실명)	책임자	부서장

[상속] 대표상속인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위임장

※ 대표상속인

성명	(대표상속인) 김다우	생년월일	(대표상속인) 1975.01.01	인감 (소액은 서명)	
피상속인 성명	(피상속인) 김키움	생년월일	(피상속인) 1950.01.01		

※ 공동상속인 (미성년자 또는 공동상속 희망시, 각 상속인 명의 계좌 기재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증권 계좌 또는 은행 계좌	인감 (소액은 서명)
			계좌번호	
김투자	1976.01.01	010-8765-4321		

※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 동의 [요약]

요약 동의서가 기본 제공되며, 필요한 경우 상세 동의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[귀 사]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[귀 사]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경우에는 「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수집·이용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상속인(들)의 대표상속인에 대한 권한 위임 - 피상속인 및 상속인 본인 확인 등을 통한 금융사고 방지 	
보유·이용 기간	(금융)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※단,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.	
거부 권리 및 불이익	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"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"는 대표상속인에 대한 공동상속인 권한 위임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 거부 시 권한 위임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
수집·이용 항목 (8개)		
└ 일반개인정보(7개)	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등	
└ 신용거래정보(1개)	계좌번호	
위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동의함
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, 피상속인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공동상속인(들)이 피상속인의 잔고확인서를 직접 확인하여,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였고, 위 대표상속인을 공동상속인(들)의 대표상속인으로 지명하였으니, 대표상속인에게 명의변경 및 출금 출고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.

공동상속인(들)은 각자의 피상속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며, 이 외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연대하여 확인합니다. 향후, 본 상속재산에 대하여 타 상속인이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동상속인(들)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겠으며, 귀 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약속합니다. (단, 분할상속을 희망하는 상속인은 해당 명의의 계좌로 상속 요청합니다.)

이에 공동상속인(들)이 연대하여 인감 날인하고, 인감증명서를 첨부(소액은 제외)하여 귀 사에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